

참고

중개보수 효율체계 개선 사항 요약

① 주택효율 (조례 개정)

매매 · 교환						임대차 등					
현 행			개선안			현 행			개선안		
거래금액	상한 요율	한도액	거래금액	상한 요율	한도액	거래금액	상한 요율	한도액	거래금액	상한 요율	한도액
5천만원 미만	1천분 의 6	250,000원	현행 유지			5천만원 미만	1천분 의 5	200,000원	현행 유지		
5천만원 이상 ~2억원 미만	1천분 의 5	800,000원				5천만원 이상 ~1억원 미만	1천분 의 4	300,000원			
2억원 이상 ~6억원 미만	1천분 의 4	-				1억원 이상 ~3억원 미만	1천분 의 3	-			
거래금액	요율	거래금액	상한 요율	한도액	거래금액	요율	거래금액	상한 요율	한도액		
6억원 이상	1천분의 9이내 에서 협의	6억원 이상 ~9억원 미만	1천분 의 5	-	3억원 이상	1천분의 8이내 에서 협의	3억원 이상 ~6억원 미만	1천분 의 4	-		
		거래금액	요율				거래금액	요율			
		9억원 이상	1천분의 9이내 에서 협의				6억원 이상	1천분의 8이내 에서 협의			

② 오피스텔 효율 (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)

매매 · 교환			임대차 등		
현 행		개선안	현 행		개선안
요율		상한요율	요율		상한요율
1천분의 9이내 에서 협의		1천분의 5	1천분의 9이내 에서 협의		1천분의 4

* (적용대상)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로서 상·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,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